

# 서울특별시시민상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335
----------	-----

2022년 12월 22일  
행정자치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- 제 출 자 : 서울특별시장
- 제 출 일 : 2022년 10월 17일
- 회 부 일 : 2022년 10월 21일
- 상 정 일 : 제315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제9차 행정자치위원회  
2022년 12월 19일 상정·의결(원안가결)

## 2. 제안설명의 이유

(제안설명자 : 행정국장 정상훈)

### 가. 제안 이유

- 상위법(「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」)의 개정과 변화된 시대상을 반영하여 서울특별시성평등상의 수상기간을 변경하고자 함.
- 후보자 추천 절차를 강화하여 시민상 권위를 제고하고자 함.
- 수상자 결정 후 서울시 누리집(홈페이지)에 정보를 공개하고자 함.

## 나. 주요내용

- 서울특별시성평등상 시상 시기를 “여성주간(7월 1일~7월 7일)”에서 “양성평등주간(9월 1일~9월 7일)”으로 변경함.(안 제4조)
- 수상후보자 추천 인원을 일괄적으로 ‘30인 이상의 연서’로 변경함.(안 제5조)
- 수상자 결정 후 서울시 누리집에 공개함.(안 제6조)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」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참조

다. 기타

- (1) 입법예고 (2022. 8. 11. ~ 8. 31.) 결과: 이견없음.
- (2) 신·구조문 대비표: 붙임

## 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(수석전문위원 김태한)

### 가. 조례 개정 입법취지 및 필요성 검토

-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(「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」)이 개정(2020.9.20)됨에 따라 법령 사항을 반영하여 서울특별시성평등상 수여 기간을 변경하고(안 제4조제1항제6호), 개인이 수상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할 때 연서해야 하는 인원을 일괄적으로 '30인 이상의 연서'로 개정하고(안 제5조제2항), 시상이 결정된 수상자를 서울시 누리집(홈페이지)에 공개(안 제6조제3항)하려는 것임.
- 본 개정안은 상위 법령(「양성평등기본법」)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상위법령과의 정합성을 일치시켜 적용과 해석의 혼란을 방지하고 체계를 재정비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.
- 또한, 수상후보자 추천 절차 강화를 통해 시민상의 권위를 제고하고, 시상 결정자를 서울시 누리집(홈페이지)에 공개하여 시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으로 보임.
- 다만,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의 지연 사유와 수상 후보자 추천 인원 확대가 적정한지와 시상 결정자 공개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대책의 필요성은 없는지 등에 대해서 종합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.
  - ※ 서울특별시시민상은 서울의 발전과 밝고 건전한 시민사회의 기풍을 진작 시키는데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시민·단체 등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봉사상, 문화상, 환경상, 복지상, 어린이 및 청소년상, 성평등상, 교통문화상, 건축상, 건설상, 안전상 등 총 10개 분야에 걸쳐 연 1회 시상하고 있음.

#### [서울특별시시민상 10개 분야별 연혁]

- 개별조례에 근거하여 운영 및 조례 통합('03. 06. 16.)
  - ~'03.6월 : 소관부서별 개별조례에 따라 시상

- ①문화('49), ②어린이 및 청소년('79), ③건축('86), ④시민대상('89),  
 ⑤자랑스러운 시민상('92), ⑥환경('97), ⑦조경('98), ⑧교통('00)

- '03. 06. 16. : 8개분야를 「서울사랑 시민상」으로 통합 및 조정
  - ▶ 시민대상은 봉사상으로 변경, 자랑스러운시민상은 폐지, 조경상은 환경부문으로 통합, 복지부문과 토목부문 신설
- '04. 06. 21. : 여성부문 신설, 복지부문 구분(자원봉사·후원·종사자 / 장애극복)
- '06. 11. 20. : 「서울특별시 시민상」으로 명칭 변경
- '15. 05. 14 : 안전상 신설
- '16. 05. 19 : 시상명칭 변경(토목상 ⇒ 건설상) 및 인원 조정
- '17. 09. 21 : 시상명칭 변경(여성상 ⇒ 성평등상)

### [시민상 종류별 시상인원 및 시상일 현황]

(단위 : 명)

종류별	시상인원 (조례 [별표 1] 기준)				시상일(조례 제4조 기준)	주관과
	계	대상	최우수상	우수상		
계	252	13	67	172		
봉 사 상	21	1	5	15	· 10월 28일	자치행정과
문 화 상	14	-	14	-	· 10월 20일	문화정책과
환 경 상	21	1	5	15	· 6월 5일	환경정책과
복 지 상	16	2	5	9	· 9월 7일 (복지자원봉사·후원분야) · 4월 20일~4월 26일 (장애인인권 분야, 장애인주간)	복지정책과 장애인복지정책과
어린이 및 청소년상	114	4	22	88	· 5월 5일 (어린이 및 소년분야) · 5월 셋째주 월요일 (청년 및 청소년지도 분야)	청소년정책과
성평등상	6	1	2	3	· 7월 1일~7월 7일(여성주간)	양성평등담당관
교통문화상	6	1	2	3	· 10월 31일	교통정책과
건 축 상	31	1	5	25	· 6월 18일	건축기획과
건 설 상	16	1	5	10	· 9월 10일	기술심사담당관
안 전 상	7	1	2	4	· 10월 21일	안전지원과

## 나. 세부 내용 검토

### 1) 서울특별시성평등상 수상시기 변경(안 제4조제1항제6호)

- 안 제4조제1항제6호는 상위 법령(「양성평등기본법」 시행령)<sup>1)</sup>이 개정(2020. 9. 22.)됨에 따라 시상시기를 “여성주간(7월 1일~7월 7일)”에서 “양성평등주간(9월 1일~9월 7일)”으로 변경하려는 것임.

※ 「양성평등기본법」 시행령이 2020년 9월 22일 개정되면서 매년 7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로 하던 양성평등주간을 여성인권 및 양성평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여권통문(女權通文)의 날<sup>2)</sup>인 9월 1일부터 9월 7일까지로 변경함.

- 현행 조례의 “여성주간”은 「여성발전기본법」 제14조에 근거했던 명칭으로, 「여성발전기본법」이 「양성평등기본법」으로 법이 개정되면서 “여성주간”이 “양성평등주간”으로 변경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보임.

현행	개정안
제4조(시상 방법 및 시기) ① 시상은 시상종류별로 연1회 실시하되, 그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 시장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시상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. 1. ~ 5. (생략) <u>6. 서울특별시성평등상 : 여성주간(7월 1일~7월 7일)</u> 7. ~ 10. (생략) ② (생략)	제4조(시상 방법 및 시기) ① 시상은 시상종류별로 연1회 실시하되, 그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 시장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시상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. 1. ~ 5. (현행과 같음) <u>6. 서울특별시성평등상 : 양성평등주간(9월 1일~9월 7일)</u> 7. ~ 10. (현행과 같음) ② (현행과 같음)

1) 「양성평등기본법」 시행령 제23조(양성평등주간 행사) ① 법 제38조에 따라 매년 9월 1일부터 9월 7일까지를 양성평등 주간으로 한다. <개정 2020. 9. 22.>

2) 여권통문의 날은 1898년 9월 1일 서울 북촌 양반 여성들이 주축이 되고 300여 명의 여성들이 찬동해 이뤄진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인권선언을 기리는 날.

- 여성정책을 둘러싼 사회 환경과 관련 법제도가 크게 변화하고, 여성정책의 패러다임이 ‘여성발전’에서 ‘실질적 양성평등 실현’으로 전환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해 수상시기를 양성평등주간과 일치시킨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.
- 다만, 본 개정안은 근거 법령인 「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」이 개정(2020.9.22.)된 후 2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이를 개정하려는 것으로, 본 조례의 개정 지연에 대한 행정국의 책임있는 설명과 함께 향후 법령 개정사항이 적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행정국의 관심과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.

## 2) 수상후보자 추천 절차 강화(안 제5조제2항)

- 현행 조례에서는 수상후보자를 개인이 추천하고자 하는 때에 ‘어린이 및 청소년상은 30인 이상’, ‘그 밖의 시상종류는 10인 이상’으로 규정하고 있으나, 안 제5조제2항은 10개 시민상 모두 연서 인원을 30인 이상으로 통일하여 규정하려는 것임.

※ 서울특별시 시민상은 시상종류별로 후보자를 관계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이 추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, 개인이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어린이 및 청소년상의 경우 30인 이상 연서, 그 밖의 시상에는 10인 이상 연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현행	개정안
제5조(수상후보자 추천 등) ① (생략)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이 수상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때에는 <u>다음 각호의 인원이</u> 연서로 하여야 한다. 1. <u>서울특별시어린이및청소년상</u> :	제5조(수상후보자 추천 등) ① (현행과 같음)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이 수상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때에는 <u>30인 이상</u> 의 연서로 하여야 한다. <삭제>

30인 이상	
2. 그 밖의 시상종류 : 10인 이상	<u>&lt;삭 제&gt;</u>
③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

- 동 개정안은 10개 시민상에 대해 통일적으로 ‘30인 이상 연서’로 규정함으로써 시민상의 위상 강화와 시민상 간의 형평성 제고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.
- 다만, 추천 절차를 ‘30인 이상 연서’로 강화함으로써 시민상의 권위가 실제 높혀질 수 있는 것인지 여부와 추천 절차 강화를 통해 시민들이 시민상에 접근할 수 있는 진입장벽을 높이는 요소로 작용할 여지는 없는지에 대해서 다각적인 논의와 정책적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됨.
- 오히려, 서울특별시어린이및청소년상의 추천절차와 같이 ‘10인 이상 연서’로 추천인원을 조정하여 10개 분야의 모든 시민상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춰 시민상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.
- 한편, 법제처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르면 ‘인’을 ‘명’으로 표기할 것을 권장하고 있는바, 용어순화가 필요한 것은 아닌지 살펴보아야 할 것임.

**[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①자주 나오는 정비 대상 용어]**

용 어	권 고 안
1인	[사람인 경우] 1명

-출처 : 법제처,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 별책 부록 001쪽.

### 3) 시상 결정 수상자 공개(안 제6조제3항)

- 안 제6조제3항은 서울특별시 시민상 수상결정자를 서울시 누리집(홈페이지)에 공개하도록 신설하려는 것임.

현 행	개 정 안
제6조(시상대상자 결정) ①·② (생략) <u>&lt;신설&gt;</u>	제6조(시상대상자 결정) ①·② (현행과 같음) <u>③ 시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 누리집(홈페이지)에 제1항에 따라 결정된 수상자를 공개하여야 한다.</u>

- 동 개정안은 수상자 결정 후 서울시 누리집(홈페이지)에 공개하여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시상자에 대한 시민들의 알권리 보장과 시상의 투명성 제고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.
- 다만, 서울시 누리집(홈페이지)에 수상결정자를 공개하는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사항인바, 정보공개 시 수상자에게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는 추가 규정을 조례에 명시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임.
- 한편, 동 개정안 주요내용 중 안 제6조가 안 제7조로 오기되어 제출되었는바, 행정국은 세밀한 검토와 함께 이와 동일한 상황이 반복하여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함.

### 서울특별시시민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335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22년 10월 17일  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장

#### 2. 주요내용

- 가. 서울특별시성평등상 시상 시기를 변경함 (안 제4조)
- 나. 수상후보자 추천 절차를 강화함 (안 제5조)
- 다. 수상자 결정 후 시 누리집에 공개함 (안 제7조)



5. 질의 및 답변요지 : 없 음.

6. 토 론 요 지 : 없 음.

7. 심 사 결 과 : 원안 가결(재석위원 8명, 전원찬성).

8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.

9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 음.

# 서울특별시시민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335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22년 10월 17일  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장

## 1. 제안이유

상위법 개정을 반영하고 후보자 추천 절차를 강화하는 등 일부개정함으로써 시민상 권위를 제고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서울특별시성평등상 시상 시기를 변경함 (안 제4조)
- 나. 수상후보자 추천 절차를 강화함 (안 제5조)
- 다. 수상자 결정 후 시 누리집에 공개함 (안 제7조)

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」
- 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참조
- 다. 기타

- (1) 입법예고 (2022. 8. 11. ~ 8. 31.) 결과: 의견없음
- (2) 신·구조문 대비표: 붙임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## 서울특별시시민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시민상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6. 서울특별시성평등상 : 양성평등주간(9월 1일~9월 7일)

제5조제2항 중 “다음 각호의 인원이”를 “30인 이상의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, 제2호를 삭제한다.

제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시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 누리집(홈페이지)에 제 1항에 따라 결정된 수상자를 공개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4조(시상 방법 및 시기) ① 시상은 시상종류별로 연1회 실시하되, 그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 시장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시상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.</p> <p>1. ~ 5. (생략)</p> <p>6. <u>서울특별시성평등상 : 여성주간(7월 1일~7월 7일)</u></p> <p>7. ~ 10. (생략)</p> <p>② (생략)</p> <p>제5조(수상후보자 추천 등) ① (생략)</p> <p>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이 수상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때에는 <u>다음 각호의 인원이</u> 연서로 하여야 한다.</p> <p>1. <u>서울특별시어린이및청소년상 : 30인 이상</u></p> <p>2. <u>그 밖의 시상종류 : 10인 이상</u></p> <p>③ (생략)</p> <p>제6조(시상대상자 결정) ①·② (생략)</p> <p><u>&lt;신 설&gt;</u></p>	<p>제4조(시상 방법 및 시기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5. (현행과 같음)</p> <p>6. <u>서울특별시성평등상 : 양성평등주간(9월 1일~9월 7일)</u></p> <p>7. ~ 10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5조(수상후보자 추천 등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----- <u>30인 이상</u> ----- -----.</p> <p><u>&lt;삭 제&gt;</u></p> <p><u>&lt;삭 제&gt;</u>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6조(시상대상자 결정) ①·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<u>시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 누리집(홈페이지)에 제1항에 따라 결정된 수상자를 공개하여야 한다.</u></p>

서울특별시시민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 :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1항에 해당

제3조(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)

제3조(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) ① 의원·위원회·시장·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·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. 다만,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
  2.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-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3. 미첨부 사유

-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움

4. 작성자

- 행정국 자치행정과 김예원(2133-5826)